

부산고등법원 2024. 9. 5 선고 2023나58506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 2024. 9. 5 선고 2023나5850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가합4570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경, 담당변호사 이정훈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든, 담당변호사 권영준, 김상용

변론종결 2024. 7. 18.

판결선고 2024. 9. 5.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가합4570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81,663,6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5.부터 2022. 9. 19.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당심에서 추가한 항변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항변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당심 추가 항변

1) 민법 제103조 위반 무효 항변

원고가 I, G으로 하여금 이사회 결의 없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서에 따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연대보증 제외 합의 항변

임시적잠정적으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이후에, 원고, D, 피고 사이에 피고를 연대보증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연대보증 범위 제한 항변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최대 1,021,225,000원으로 제한된다.

나. 민법 제103조 위반 무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가 I, G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실, G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측 J 전무이사, K 재무전무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이 사건 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검사가 I, G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 등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 6,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I, G으로 하여금 이사회 결의 없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의 주장대로 하면, 피고로서는 I, G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함과 아울러 원고측 임원인 J 전무이사, K 재무전무도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한 교사 등으로 고소를 함이 자연스러운데, 피고는 위 원고측 임원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고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② G은 피고소인, 피의자의 신분에서 수사를 받았으므로 가능한 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G이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 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와 D 사이에 체결된 'E 신축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서 작성일인 2020. 12. 10.보다 훨씬 이전 시점인 2020. 3. 20. 이미 건물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으므로(갑 제11호증), 공사를 매개로 이 사건 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는 G의 위 진술은 허위일 개연성이 높다.

③ 오히려 원고는 I과 G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는 위 고소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으나, 갑 제10호증에 의하면 여전히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④ 이사회를 개최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의 내부 사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연대보증 제외 합의 항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서 작성 이후에, 원고, D, 피고 사이에 피고를 연대보증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 ① 이 사건 각서에 그 효력이 임시적잠정적이라고 볼 만한 기재가 없다. 피고는 달리 이 사건 각서가 임시적잠정적으로 작성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처분문서나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 ② 이 사건 각서 작성 경위를 보면, D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상태에서, 원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D,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 ③ 이 사건 각서 작성 이후에 원고, D,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서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된 처분문서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라. 연대보증 범위 제한 항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연대보증책임 범위가 최대 1,021,225,000원으로 제한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 ① 이 사건 각서에는 변제금액 내지 변제범위에 대하여 ‘2020. 12. 24.까지 abi 유동화 상환자금(25억 원)을 변제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각서 작성 이전에 변제된 금액에 한정된다는 취지의 기재는 따로 없는 한편, 위 문언에 의하면, 25억 원을 한도로 하여 2020. 12. 24.까지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한 abi 유동화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 ②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25억 원이라는 금액이 기재된 경위를 보면,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원고가 이미 변제하여 D이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유동화 대출금 채무로 확정된 1,119,671,232원과 이

사건 각서 당시 잔존한 금액이었는데 향후 D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원고가 변제하여야 할 대출원금 1,021,225,290원을 합쳐서 대략 25억 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2020. 12. 24. D을 대신하여 잔존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결국 피고의 보증채무는 2,181,633,645원으로 특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희영, 판사 임상민, 판사 박진웅